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④ - 용연서원(龍淵書院) 上

# 이덕형 · 조정의 학문과 덕행 추모위해 창건

## 경기도내 남인세력 유력한 근거지로 활용



최 중 규  
포천문화유적 회장

### ▲ 서원의 연혁

용연서원은 지난 1976년 8월 27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용연서원 1691년(숙종 17)에 이사상(李師相) 등의 남인계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이덕형(李德馨)과 조정(趙鼎)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와 영정을 모셨다. 남인 집권 기인 1692년(숙종 18)에 '용연(龍淵)'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용연'이라는 사액은 지금의 서원터 부근에 있었던 연못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서원 이름은 '용연'이라 한 것은 용주(龍洲) 조정선생의 호를 따서 명명한 것 일 수도 있으나, 이곳의 지명과의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포천군 읍지인 『경성지(京城誌)』 명승(名勝)조에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

용연서원은 특히 경기도내 남인세력의 유력한 근거지로서 선현배향과 향촌교화의 임무를 담당하여 왔다. 임진왜란 당시 이덕형이 세운 공로가 인정되어,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시에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되었다.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사우, 강당, 동재, 서재 등이 있었으나 6·25 등으로 소실되어 사우만 남았었다.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된 목조기와로서 1972년에 보수하였다. 사우 안에는 이덕형, 조정의 영정과 위패가 각각 중앙 좌우에 봉안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복원사업으로 강당, 담장, 외삼문, 홍살문 등을 복원하여 창건 당시의 모습을 거의 회복하였으나, 동재와 서재는 아직도 복원되지 못하였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포천유림의 주관의 음 2·8 중정(中丁)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 ▲ 배향인물

용연서원에 배향된 이덕형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165번지에 위치한 용연서원은 1691년(숙종17)에 창건됐다.

(1561~1613)과 조정(1586~1669)은 모두 이곳에서 은거하면서 만년을 보낸 인물이다. 남인계 학자라는 점에서 상통한다. 조정은 이곳의 지명을 따서 자신의 호를 '용주(龍洲)'라고 하였다.

이덕형이 이곳에 은퇴한 이유는 바로 공이 어렸을 때 성장하였던 외숙 유정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덕형은 남인출신으로 영의정이자 복인의 영수였던 이산해(李山海)의 사위가 되어 한때 남인과 복인의 중간 노선을 지켰으나 뒤에는 남인에 가담하였다.

### -이덕형(李德馨) 1561(명종 16)~1613(광해군 5)

선생은 조선시대 문신이며 학자로 포천을 자작리에서 출생·성장하였다. 자는 명보(明甫), 호는 포옹산인(抱翁山人)·쌍송(雙松)·한음(漢陰)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좌의정 극균(克均)의 5대손이며, 지중추부사 민성(敏聖)의 자이다.

백사 이항복,봉래 양사언과 절친하였으며 용연서원에 제향되고 있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고 학문에 정진하여 1580년(선조 13) 20세의 나이로 별시문과 과에 급제, 승문원에 재직하면서 선조의 눈에 들어 서적을 하사받게 도승지로 제임하고 있을 때라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곧 사양하였다.

이후 흥문관직자를 배수받았고 1582년(선조 15)에는 조사(詔使)로 온 명나라 사신 왕경민이 그의 소문을 듣고 만나려 하였으나 사신을 사사국이 만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사

하여 뜻을 이루었으며 명군과 함께 울진까지 동행하여 그들을 위로하였다. 또 이순신, 명의 제독 유정과 함께 순천에서 고니시의 군사를 대파하기도 했다. 1598년(선조 31)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으로 훈련도감도제조를 겸하였고 이듬해 흥어순이 유정과와 관계를 모함하여 벼슬의 뜻을 버리고 10여 회에 걸쳐 사직을 청하는 글을 올렸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1601년(선조 34) 평안추부사로 경상·전라·충청·강원 4도의 체찰사를 겸하여 민심의 수습과 군비정비에 경주하는 한편 대마도를 정벌할 것을 주창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02년(선조 35) 40세에 영의정에 올랐으며 1604년(선조 37) 양란때의 공을 들어 이항복이 호성공신에 녹훈할 것을 주창했으나 시기하는 무리들의 반대와 본인이 고사로 책록되지 못했다.

1606년(선조 39) 영주추부사로 옮겨다가 1608년(선조 41) 광해군이 즉위하자 진주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재차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이때 임해군의 고변이 있어 삼사와 모든 대신들이 반대하는 등 사사(死)할 것을 주창하였으나 이항복과 함께 의로써 처단하는 것보다는 은(隱)으로써 감사를 받을 것을 주창하였다. 1613년(광해군 5) 이이첨의 사주로 삼사에서 영차대군을 극형에 처할 것과 폐모론을 교섭하였으나 실패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산진을 점령한 후 북상하던 왜장 고니시가 충주에서 그를 만날 것을 요청해오자 이를 수용하여 혼자 적진을 향해 들어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선조가 신의주로 피난하던 중 평양에 이르자 왜군은 이미 평양에 도착하여 화의를 요청함에 단독으로 겐소와 대담하여 대외로써 그들의 질락을 공박하였다.

이후 정주까지 왕을 호종하고 명나라에 청원사로 파견되어 명의 원조를 구하였으며 돌아와서는 대사헌을 지낸 후 한성판윤으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접판관이 되어 전쟁이 끝날때까지 그와 행동을 같이하였다. 이듬해 병조판서를 지낸 후 이조판서로 훈련도감도제조를 겸하였고 1595년(선조 28) 경기도를 비롯하여 황해·평안·함경 4도의 체찰부사를 역임하였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일어나서는 서울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명의 어사 양호를 설득

하여 뜻을 이루었으며 명군과 함께 울진까지 동행하여 그들을 위로하였다. 또 이순신, 명의 제독 유정과 함께 순천에서 고니시의 군사를 대파하기도 했다. 1598년(선조 31)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으로 훈련도감도제조를 겸하였고 이듬해 흥어순이 유정과와 관계를 모함하여 벼슬의 뜻을 버리고 10여 회에 걸쳐 사직을 청하는 글을 올렸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1601년(선조 34) 평안추부사로 경상·전라·충청·강원 4도의 체찰사를 겸하여 민심의 수습과 군비정비에 경주하는 한편 대마도를 정벌할 것을 주창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02년(선조 35) 40세에 영의정에 올랐으며 1604년(선조 37) 양란때의 공을 들어 이항복이 호성공신에 녹훈할 것을 주창했으나 시기하는 무리들의 반대와 본인이 고사로 책록되지 못했다.

1606년(선조 39) 영주추부사로 옮겨다가 1608년(선조 41) 광해군이 즉위하자 진주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재차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이때 임해군의 고변이 있어 삼사와 모든 대신들이 반대하는 등 사사(死)할 것을 주창하였으나 이항복과 함께 의로써 처단하는 것보다는 은(隱)으로써 감사를 받을 것을 주창하였다. 1613년(광해군 5) 이이첨의 사주로 삼사에서 영차대군을 극형에 처할 것과 폐모론을 교섭하였으나 실패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산진을 점령한 후 북상하던 왜장 고니시가 충주에서 그를 만날 것을 요청해오자 이를 수용하여 혼자 적진을 향해 들어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선조가 신의주로 피난하던 중 평양에 이르자 왜군은 이미 평양에 도착하여 화의를 요청함에 단독으로 겐소와 대담하여 대외로써 그들의 질락을 공박하였다.

이후 정주까지 왕을 호종하고 명나라에 청원사로 파견되어 명의 원조를 구하였으며 돌아와서는 대사헌을 지낸 후 한성판윤으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접판관이 되어 전쟁이 끝날때까지 그와 행동을 같이하였다. 이듬해 병조판서를 지낸 후 이조판서로 훈련도감도제조를 겸하였고 1595년(선조 28) 경기도를 비롯하여 황해·평안·함경 4도의 체찰부사를 역임하였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일어나서는 서울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명의 어사 양호를 설득

하여 뜻을 이루었으며 명군과 함께 울진까지 동행하여 그들을 위로하였다. 또 이순신, 명의 제독 유정과 함께 순천에서 고니시의 군사를 대파하기도 했다. 1598년(선조 31)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으로 훈련도감도제조를 겸하였고 이듬해 흥어순이 유정과와 관계를 모함하여 벼슬의 뜻을 버리고 10여 회에 걸쳐 사직을 청하는 글을 올렸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 ●●●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⑦

# 경찰제도의 유형



노 영 민  
포천경찰서

각국의 경찰제도는 경찰제도에 상 그 발전과정에서 경찰의 업무를 국가적 이익과 지방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그 주체가 국가이나 자치단체나를 중심으로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이념이나 행정제도에 의존함이 보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이나 치안상태 및 경찰의 발전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경찰제도는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가지고 있고, 영미법계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중심적인 지방분권화된 자치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양제도의 조직, 임무, 수단 등을 비교해 보면 개괄적이고 유형적인 것에 불과하며,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국들은 양제도의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20세기에 들어와 더욱 두드러져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프랑스가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한 영·미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영미법계의 국가들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국가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호간 제도상의 장점을 채택하여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의 경찰제도는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제도를 취하고 있거나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경찰제도를 혼합하여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양제도를 절충한 형태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구별하여 중앙에는 국가경찰을 두고, 지방에는 자치경찰체제를 혼합한 이원적 절충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의 두 가지 경찰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본다.

국가경찰제도는 경찰권이 국가의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경찰은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조직에 의해 소극행정의 기능 이외에 일부 적극행정의 기능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치안목적에 관한 권력작용에 한하지 않고, 부리중진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도 포함한다.

집권화된 경찰체제는 경찰력

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국가에서 존재한다. 실제로 경찰조직은 관리형태와 운영구조에 있어서는 더욱 분권화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법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경찰작용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별되는데, 이중 사법경찰은 수사과 피의자의 체포라는 작용만을 행하는 경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검찰관의 지휘를 받는다.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는 국가가 경찰조직의 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가지며,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 경향을 가진다. 경찰조직의 유지의 권능과 책임이란 구체적으로 조직권, 인사권 및 경비부담권을 말한다.

국가경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로 국가의 주체가 국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경찰제도에 비해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유지·운영되기 때문에 강력하고 광범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경찰조직이 전국적·통일적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부처와 긴밀한 유기체제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경찰의 업무수행이 원활하며 동시에 다른 행정부처의 협조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전국공통의 조직체로서 중앙의 명령에 의한 각 경찰단위간의 상호조정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의 광역화, 기동화 및 비상사태에 대응이 신속하다는 점이다. 넷째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에 비해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교육훈련 등을 위한 시설, 감식설비 등 다량의 시설이나 설비를 확보하거나 활용하는데 이점이 있으며, 지방정치의 발전에 의한 인사 또는 경찰운영의 간섭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첫째로 경찰본연의 임무를 경시하고 다른 일반행정에 수반된 특수경찰에 이용되기 쉽다는 점이다. 즉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나 치안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별한

정책수행으로 정치경찰화의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국가경찰은 지역치안 수요와 무관하게 조직체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집행상의 규칙들도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 결과 치안정책이 중앙의 논리만 강조되어 지역실정과 유리된 채 유명무실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로 경찰관의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경찰관 개인은 지역에 대한 봉사보다는 중앙의 인사권의 향방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지방의 이해보다 국가의 이해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경찰관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무능률과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밖에도 경찰상의 시설 및 설비에 있어서도 전국적 평균적 관점에서 계획되기 때문에 지방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국가경찰제도는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국가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자치경찰제의 장점을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호에 계속)

# 포천을 대표하는 꽃집

## 고객만족 5년 연속 1위



▲ 이동폭포길변 송우점 실내조경

# 늘봄꽃 직매장

## 고객만족 이벤트

- **이벤트 1.** 20만원 이용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이벤트 1.** 50만원 이용시 3만원 상당 꽃배달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 **이벤트 1.** 100만원 이용시 5만원 상당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주유권 증정)
- **이벤트 1.** 200만원 이용시 15만원 상당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주유권 증정)

www.pochonflower.co.kr